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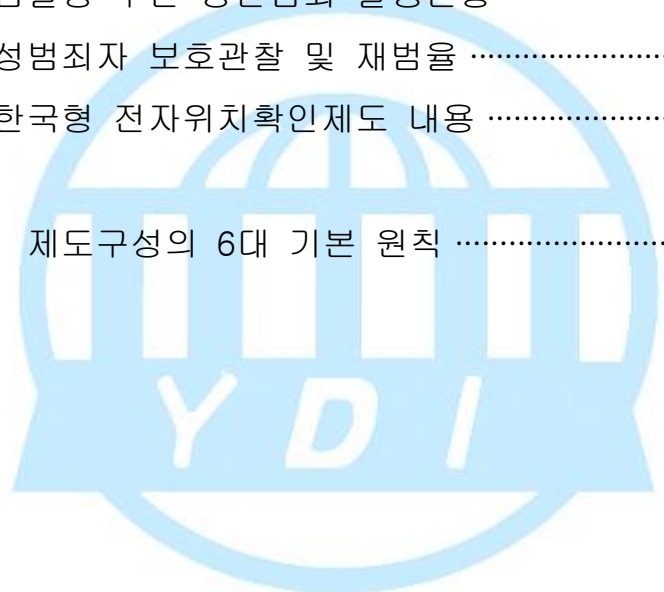
☞ 참고로 여기에 실린 내용은 HOT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목 차 】

【요약】	1
1. 제도도입의 필요성	2
가. 성범죄 발생율의 증가	3
나. 기존 통제제도의 인권 및 실효성 문제	7
다.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8
라. 성범죄자 처벌 후 통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	9
2. 외국 사례	11
가. 사례 국가	11
나. 적용 기술	13
다.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23
3. 전자위치확인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25
가. 찬성 입장	25
나. 반대 입장	31
4. 한국사회에서의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방향	33
가. 착용대상 선정 기준	35
나. 착용 기간	36
다. 통제 유형	38
라. 전자위치확인 기구 유형, 운영, 비용	43
마. 입법 방향 및 시행 절차	44
5. 기대효과 및 전망	47
【참고자료】	48

【 표/그림 목 차 】

【표1】	경찰청 추산 강간범죄 발생현황	3
【표2】	2004년도 성범죄 발생현황	4
【표3】	소년성범죄 발생현황	5
【표4】	검찰청 추산 강간범죄 발생현황	6
【표5】	성범죄자 보호관찰 및 재범율	26
【표6】	한국형 전자위치확인제도 내용	42
【그림1】	제도구성의 6대 기본 원칙	34



여의도연구소

【요약】

- 오늘날 위험사회로의 특징은 환경파괴와 같은 영역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도 감지되고 있음
- 특히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근자의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 양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감시제도라고 총칭되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거나 서두르고 있음
- 한국사회 역시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이며, 따라서 성범죄의 일반적 대상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본 Issue Brief는 이와 같은 국가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성되었음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원칙론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의 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는 오늘날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Love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음
- 본 제도의 최초 목적은 창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점차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금번에 한나라당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 정의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위치확인제도’로서, 특히 오늘날 국내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즉,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율을 낮추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본 제안의 목적임
- 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성범죄 발생율의 증가
 - 기존 통제제도의 인권 및 실효성 문제
 -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 성범죄자 처벌 후 통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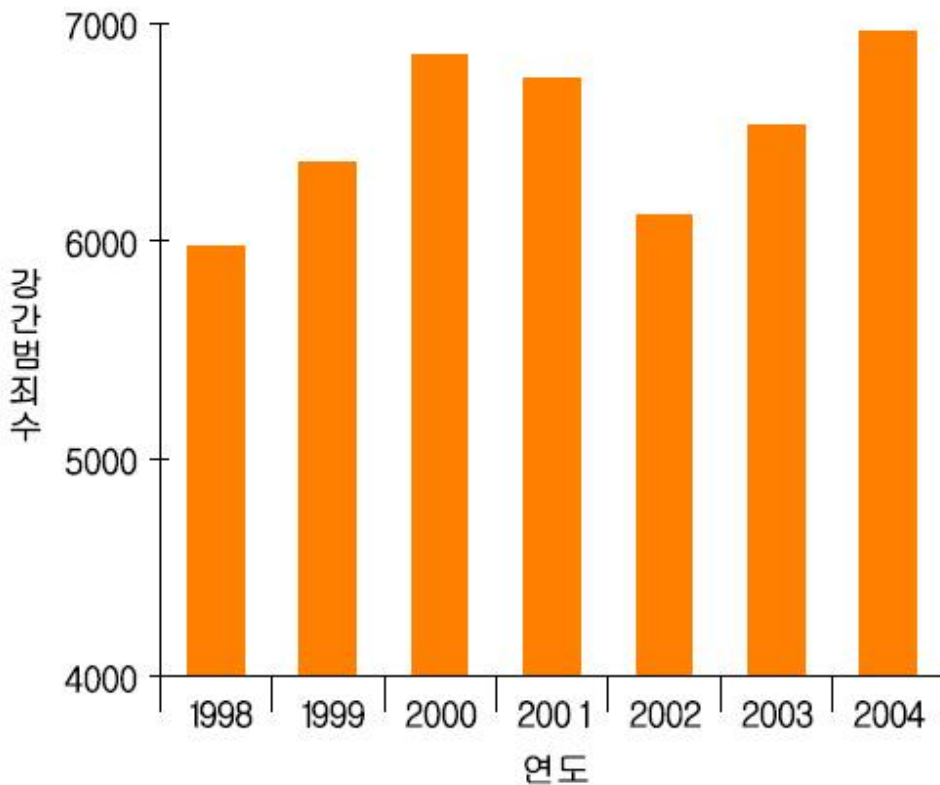
가. 성범죄 발생율의 증가

-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강간범죄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3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함

【표 1】 경찰청 추산 강간범죄 발생현황

범죄유형	'98	'99	'00	'01	'02	'03	'04
강 간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9

자료 출처 :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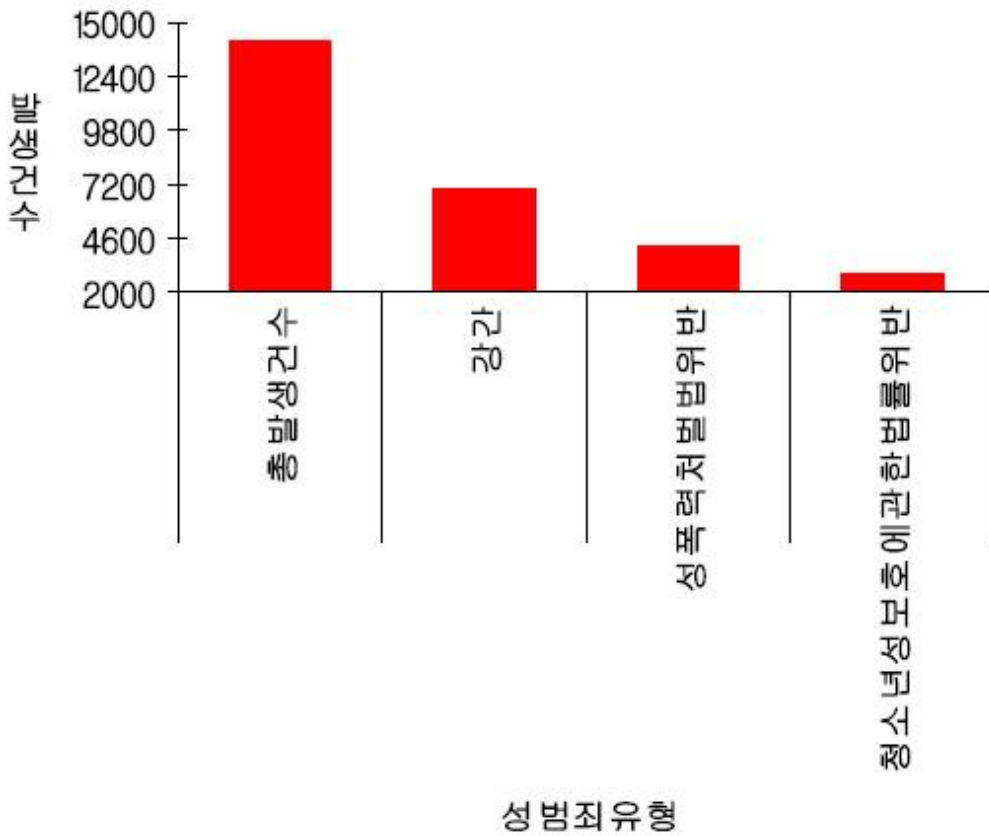


- 2004년도 성범죄를 세분화 하면 강간이 6,959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4,264건, 청소년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이 2,866건 등 총 14,089건이 발생하였음

【표 2】 2004년도 성범죄 발생현황

총 발생 건수	강 간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14,089	6,959	4,264	2,866

자료 출처 :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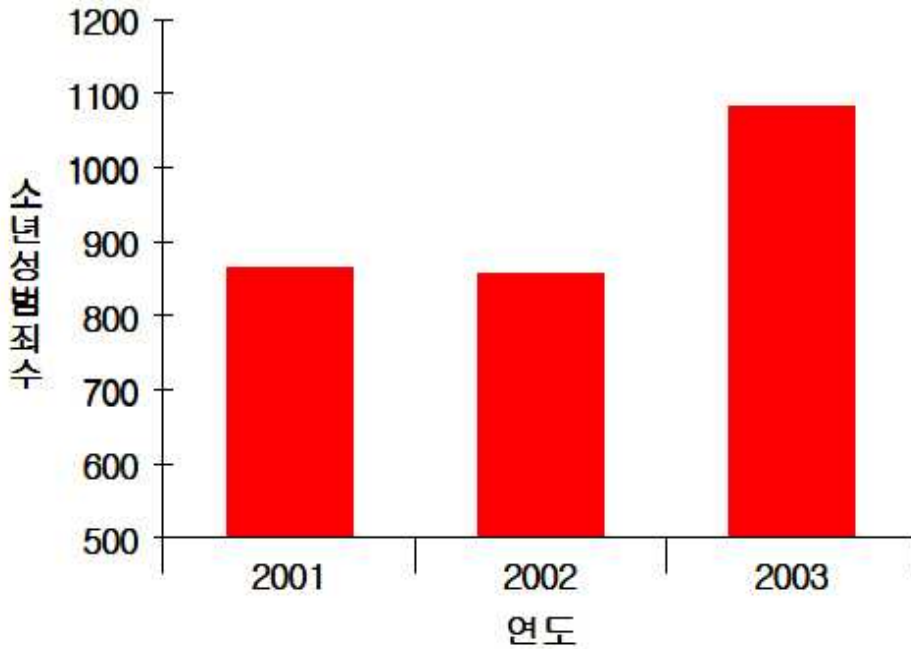


- 소년 성범죄 역시 2003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2003년도 전체 범죄 대비 소년 성범죄의 비율이 1.8%(1,08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소년성범죄 발생현황

소년 범죄 유형	2001	2002	2003
성 범죄	865(1.0)	856(1.2)	1,083(1.8)

자료 출처 : 경찰청 / ()는 전체 범죄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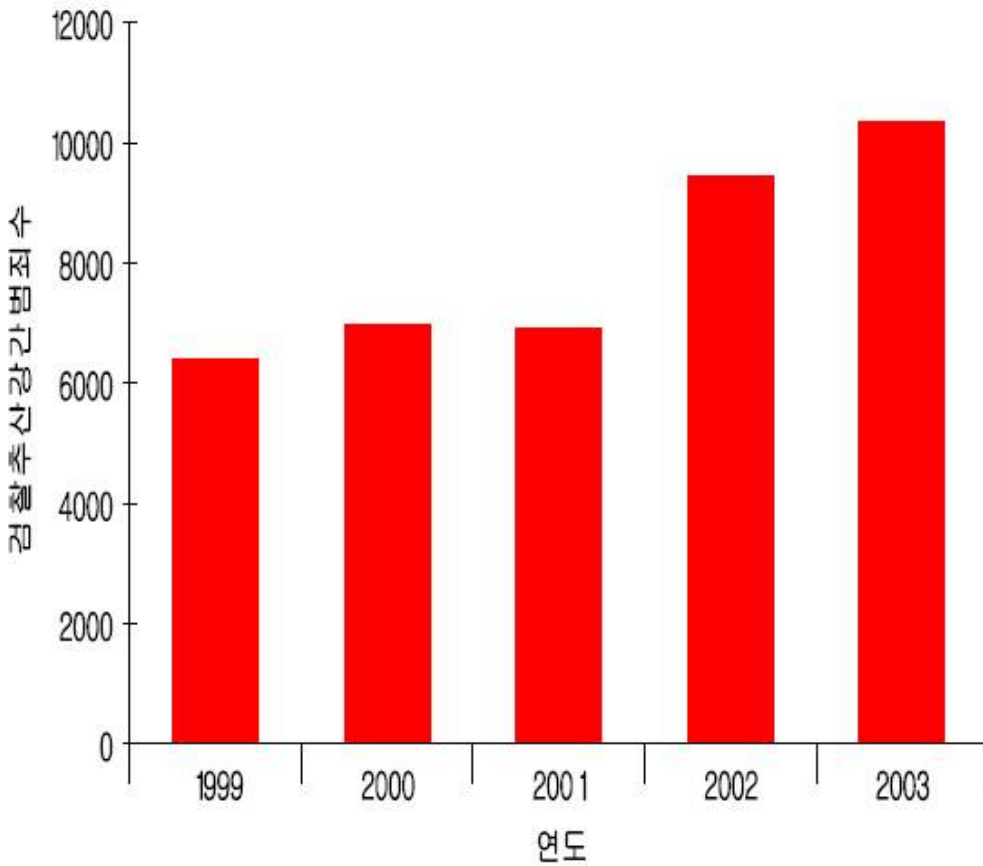


- 검찰청에서 산출한 통계를 보아도 경찰청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강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2년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급격함을 알 수 있음

【표 4】 검찰청 추산 강간범죄 발생현황¹⁾

범죄 유형	1999	2000	2001	2002	2003
강 간	6,410	6,982	6,911	9,435	10,365

자료 출처 : 범죄분석, 검찰청



1)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범죄 통계 산출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경찰청과 검찰청간의 통계수치 차이 발생

- 성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특히 인터넷 매체의 대중적 보편화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통제 불능의 문제 및 한국인의 변화되고 있는 성 개방의식 등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처럼 청소년 및 성인에 있어 성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기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나. 기존 통제제도의 인권 및 실효성 문제

-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 그 어떤 경우보다 단호히 방지해야만 하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2000년도 제정) 정부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효과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음
 - 이중처벌의 문제 :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 받은 사항에 대해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중처벌이라는 주장
 -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 성범죄자의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본인 및 그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 낙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
 -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 살인 등 성범죄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볼 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과잉처벌일 수 있다는 주장

- 더욱이, 앞서 살펴본 성범죄 발생 경향을 보아도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도부터는 범죄율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신상공개 시 대상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극단적인 방안의 도입도 적극 논의되고 있지만, 인권문제로 인하여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점차 흉폭화, 무차별화되고 있는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다.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 였음
 - 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음
-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은 일반범죄보다 더 높은 상황임
 - 특히, 청소년 시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율이 평균 70% 정도이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의 교도소 교

정효과에 의문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 완하여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 외국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주거지신고의무제도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에 의한 흉악 성범죄 재발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경우 약 53만명의 성범죄자 중 20% 정도가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들에 의한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라. 성범죄자 처벌 후 통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

- 최근 급증하고 있고 더욱 무차별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 책으로 제시된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실시한 대국민 의견조사결과(2005.04.26. 현재)

- 총 23,043명의 응답자 중 18,518명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찬성, 4,525명이 반대 의견 표시

- 이는 전체 응답자의 80.4%가 찬성하고 19.6%가 반대한 것으로 찬성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 여타 조사결과에서도 본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진행 중인 조사의 경우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그만큼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 특히, 근자에는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연령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지어 여고생 집단에 의해 동료 학생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해지는 등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의 경우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에서 종신형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속적 통제 요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 확대, 집단화, 조직화, 흉폭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경우 정신질환, 사회부적응, 가정해체 등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국민들은 이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임

2. 외국 사례

□ 전자감시제도로 총칭되는 전자위치확인제도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요약·제시하고자 함²⁾

가. 사례 국가

○ 미국

-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가석방된 성폭력범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이 장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여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
- 2005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9세, 13세 여아가 성범죄 및 다양한 전과기록의 소유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 이들 범인들은 거주 신고의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보호관찰제도에 의해 감시를 받던 중 주거지를 변경하고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
- 이들 사건으로 인하여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낸시 아르젠지아노의 발의에 의해 12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에게 종신형 또는 일정 기간 복역 뒤 평생 위치추적장치 착용을 골자로 한 ‘제시카런스퍼드 법안’을 주의회 및 연방의회에 제출하였음
- 2002년 1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의 대상자는 약 150,000명이며, 이중에서 약 1,200명이 GPS에 의한 전자감시 대상자임

2) 과거에 시행되던 전화 등을 이용한 보호관찰의 경우는 제외하며,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신 기술을 사용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우만을 외국사례로 간략히 제시함

○ 영국

- 2004년 9월2일부터 일명 ‘창살 없는 감옥 제도’를 도입
- 이 제도는 성폭행범과 절도 상습범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희망에 따라 위성추적장치가 부착된 발찌를 채워 가석방하게 되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1-2m 단위로 24시간 모니터하게 됨
- 범죄 다발지역 3곳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전화선을 이용한 기존의 전자감시제도는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약 27,000명이 대상이 되었고, 이들 중 약 2%만이 전자감시를 받던 중 재범하였음

○ 프랑스

- 2004년 말,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출감 시 그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
- 성범죄로 5년 이상 복역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착용기간은 최고 20년 동안임

○ 호주

- 빅토리아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평생 감시체제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에서 통과

- 이들에 대한 야간통금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함
- 이 법의 발의에 있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던 브리앙 존스라는 성범죄자는 향후 최고 15년까지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나. 적용 기술³⁾

- 전자감시는 소재확인을 위해 대상자가 전화하거나 신호를 보내야 하는 ‘수동적(passive) 방식’과 전파신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능동적(active)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후자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후자를 대표하는 기술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표적으로 이들 위치확인 기술은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총칭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GPS, GIS(지리정보시스템), 셀기반 기지국 시스템 등이 있음

여의도연구소

○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 Service)⁴⁾

- LBS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PS, 이동통신망(각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를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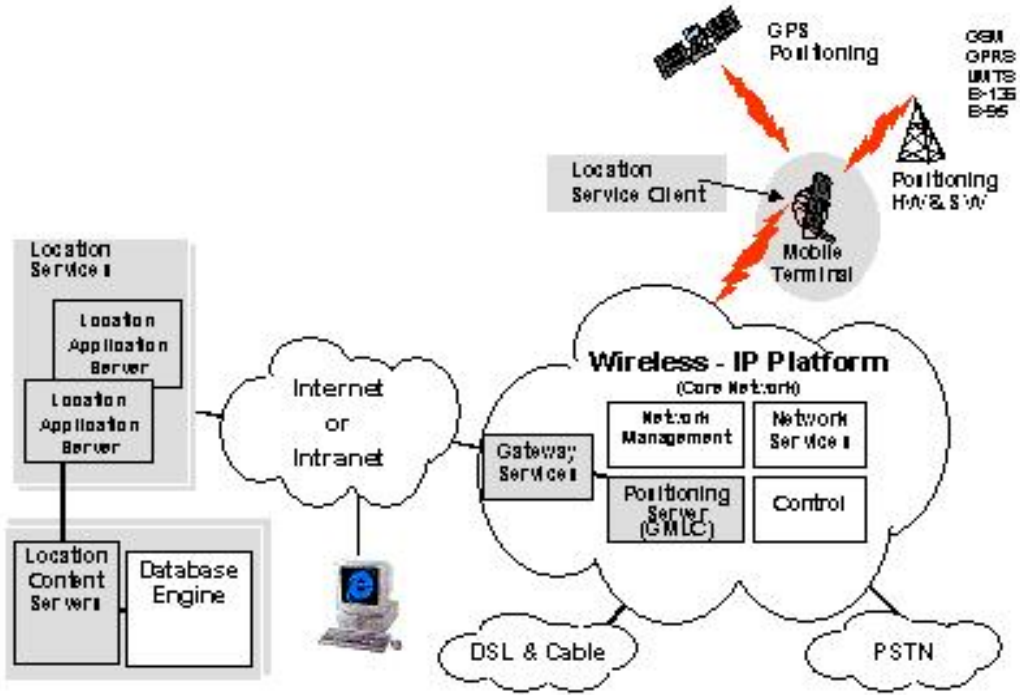
3) Cecil E. Greek, Federal Probation, 2002, 06월호(법무부에서 정리)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10.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동식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넓은 의미로의 LBS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치를 찾고, 찾은 위치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음
- 단계별 정확도 조건에 기반 한 위치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음

Location-independent	대부분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증권, 스포츠 기사, 뉴스 등
PLMN 또는 국가	한 국가나 하나의 PLMN에 제한된 서비스
Regional(200km 까지)	날씨정보, 지방별 날씨 예보, 교통정보 (출발 전)
District(20km 까지)	지방 뉴스, 교통정보
1 km 까지	차량 관제, 정체구간 우회 정보
500m - 1km	시골이나 교외 응급 서비스, 인원관리, 기타 정보서비스
100m (67%) 300m (95%)	U.S. FCC mandate(99-245) 무선 응급 전화를 위한 network 기반 위치 측정 방법 사용 시
75m - 125m	도시 SOS, 지방별 광고, home zone pricing, network 유지보수, network demand 관할, 자산 추적, 정보 서비스
50m (67%) 150m (95%)	U.S. FCC mandate (99-245) 무선 응급 전화를 위한 handset 기반 위치 측정 방법 사용 시
10m-50m	자산 위치, 경로 안내, 항법(navigation)

- LBS의 구조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개념

여의도연구소

[참고] LBS(위치기반서비스) 방법

○ 셀 기반

- 통신 회사의 서비스는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셀 기반은 가입자가 이동 시 기지국과 서로 교신을 하게 되고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기지국과 교신을 함. 이 경우 위치 추적을 해당 가입자가 교신하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추적하는 방법

○ GPS

-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셀 기반은 범위가 넓어 오차가 많은 편임. 그러나 GPS 기반은 지구상에 있는 GP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오차가 적은 편임

- LBS를 이용한 대표적인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급 서비스** : 응급 서비스는 119, 긴급호출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여 안전한 구조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함
- **응급 경계 서비스** : 응급 경계 서비스는 특정 지리적 위치 내에 있는 무선 가입자들에게 응급 통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폭풍우 경고, 임박한 화산 폭발, 지진 등에 대한 긴급 정보 제공 등을 말함
- **추적 서비스** : 추적서비스는 개인, 차량, 재산 등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임. 직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할 배달 서비스의 감독자,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부모, 동물 추적, 그리고 자산의 추적(도난차량 위치 파악 등) 등이 해당됨
- **교통 감시** : 자동차 내에 장착된 무선 단말기들을 통해 익명의 차량들에 대한 평균 속도를 감지하여 과속 등에 대해 경고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교통혼잡을 계산할 수 있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항법** : 항법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은 핸드셋 사용자에게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것임. 사용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신속하고 정

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

- **도시관광 및 Mobile Yellow Pages** : 관광객에게 현 위치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역사적인 장소를 묘사하거나, 관광지들 간의 항법 경로 제공, 인근 식당이나 은행, 공항, 버스정류장, 화장실 시설물 등 편의시설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일종의 편리한 전화번호부 역할을 함
- **위치 의존 콘텐츠 중계** : 이 서비스 범주의 주 특징은 네트워크가 특정 지리영역 내에서 단말기들에게 정보를 자동적으로 중계한다는 것임. 정보는 주어진 영역 내에서 모든 단말기로 중계되거나, 특정한 구성원들에게만 중계될 수 있음. 사용자는 단말기로부터 이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정보 범주만 선택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지역화 된 광고를 들 수 있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위치, 인구학적, 심리학적 정보 등에 기반 하여 특정지역의 행인들에게 광고를 중계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

- 1990년대 후반, 플로리다와 몇몇 주가 GPS를 이용하여 범죄인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는, 위성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실시하게 됨
- GPS는 지상 11,000마일에서 24시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군사위성으로 구성되며, 3~5개의 위성을 사용하여 GPS 수신기가 지구상의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정확히 짚어내는 시스템
- 1999년까지 최소 16개 주의 경찰당국과 교정당국은

SMART (Satellite Monitoring and Remote Tracking)라고 불리는 위성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음

- GPS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GPS 수신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데, GPS 수신기는 허리에 찌 수 있는 소형 팩(waist pack)이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이동 기록을 저장하여 추후에 휴대폰이나 전화를 통해 기록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됨
- GPS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장비와 설치비용이 비교적 고가라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 됨
- 예를 들면 프레소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인 전자팔찌의 운용비용으로 하루에 \$7~\$10를 지불하던 것이, GPS수신기의 장착비용으로 하루에 \$16를 지불하게 됨
- 한편, 범죤인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하루에 약 \$75가 소요되고 소년 처우시설에서는 약 \$100가 소요됨

여의도연구소

[참고] GPS 전자위치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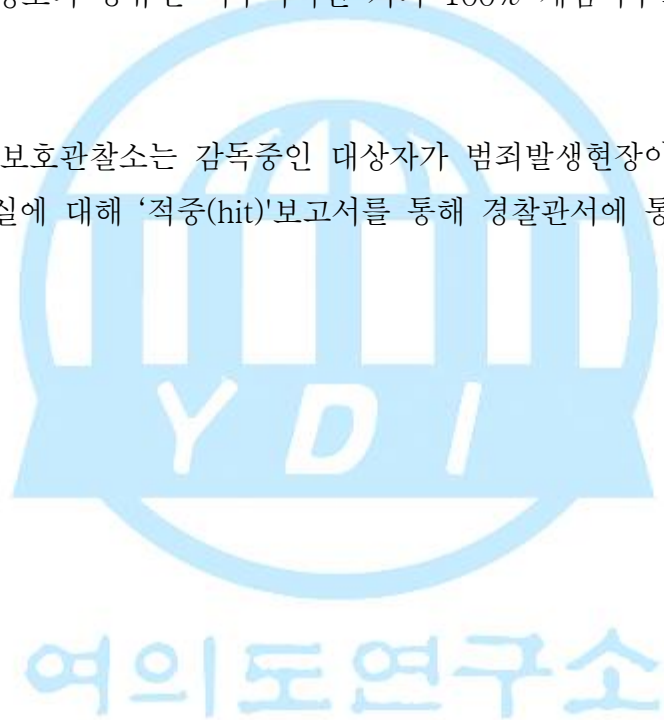
- GPS 시스템을 통해, 보호관찰당국은 “가택구금”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치확인 및 추적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됨
- 기존의 시스템은 허가된 장소를 벗어났는지 여부만을 알 수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이동경로와 시간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택구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정해진 시간에 가택이외의 장소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해 장소의 출입,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됨

○ 지리정보시스템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범죄지도

-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관건은 범죄지도(crime mapping) 소프트웨어, 즉 GIS가 제공하는 주요한 시각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임
- 이러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유관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음(예, 펜실베이니아의 JNET)
- 즉, 경찰관서 등에 보고된 범죄발생 기록과 범죄현장에 대한 정보가 GIS를 통해 처리되며, 공동정보망을 통해 이러한 정보는 유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대상자 GPS 기록내용과 자동으로 비교 분석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대상자가 범죄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즉,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확인

- 범죄지도에는 범죄발생의 시간과 장소가 입력되며 GPS에는 대상자가 위치했던 시간과 장소가 분초단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과 정보의 공유만 이루어지면 거의 100% 재범여부를 찾아낼 수 있음
- 한편, 보호관찰소는 감독중인 대상자가 범죄발생현장이나 근처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적중(hit)'보고서를 통해 경찰관서에 통보



○ 위치확인 전자기기의 예5)



손목시계형
위치확인 전자기기

- 상기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일반인들이 전자위치확인 기기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함
-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의 악세사리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음

5) 뉴욕타임즈



○ 효과성

- 아직 이 제도의 도입이 오래지 않아 많은 연구결과는 없지만,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의 시범실시 결과를 보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과 준수사항위반율이 무려 절반이상 감소하였음

- 특히, 이 제도는 상습범죄인의 재범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범죄수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⁶⁾

○ 적용 대상

-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성범죄자에 적용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은 국가 간 범죄 상황, 특징, 범죄 정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함
- 적용대상자 선정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성범죄자 중 일정 형기를 살고 일정 잔여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택
 - 중형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은 경우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착용
 - 가석방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착용
 - 경미한 성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대신하게 하여 착용

○ 통제 유형

- 일반적인 전자감시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House Arrest)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6)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죄질과 처벌의 정도 및 위치확인 기술 등에 따라 다양한 통제유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적인 통제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통금(Curfew)** : 대상자가 제한된 시간에 주거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 **가택구금(Home Detention)** : 대상자로 하여금 하루 종일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서, 생필품 구매, 의료적 치료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허용
 - **가택연금(Home Incarceration)** : 취업, 생필품 구입, 방문객 허용 등은 금하며, 외부활동은 의료적 치료 등만 허용
 - **기타 유형** : 통금 및 제한 지역을 병행하여 통제하는 방법과 GPS 등을 사용하여 주점, 피해자 주택, 학교 등 특정 지역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자유 유형 등이 있음

여의도연구소

3. 전자위치확인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가. 찬성 입장

○ 증가하는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성범죄를 범할 경우 처벌 중 또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자들의 심적 압박으로 인해 성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성범죄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궁극적으로 흉악 또는 상습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재범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성범죄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통해 재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성범죄로 인하여 2004년도에 보호관찰을 받은 사례는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367명인데 이 중 약 8% 정도가 동일 범죄로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 대상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년	869	726	662	613	776
성인	1,902	1,456	1,600	1,413	1,591
계	2,771	2,182	2,262	2,026	2,367

주 : 2004년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은 약 8%임
 자료 출처 : 법무부 관찰과

- 이러한 통계치는 신상공개 대상자 중 실형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52.4%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교도소 수감 등의 일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에서 실시한 전자감시제도 시범실시 결과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율이 기존 보호관찰 대상자들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사례를 보면,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존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 및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 직업 등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모든 행위지형이 파악됨으로써 재범 시 범죄행위에 대해 통제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검거 역시 용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음

○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제도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음
- 쇠사슬에 무거운 쇠구슬을 다는 경우, 이마나 얼굴에 낙인기호를 찍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 왔음
- 미국과 한국의 경우 신상공개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낙인이 주어지거나, 가족에게도 그 피해가 전달되는 등 현실적인 비인권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도 발생함
-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감시기구를 일반 시계 등과 같이 타인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감시 주체만 이들을 알아볼 뿐 주변인에 의한 낙인이 사라지게 될 것임
- 결국, 기존 제도가 지니고 있던 비인권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 성범죄자의 인권 역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틀 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두 부분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회안정의 중심이 되는 다수의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포함)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따라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인권에 침해가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함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국가의 인권보호 관련 의무는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집중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및 일반 다수의 인권과는 구분되어야 함

○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이중처벌이 아님

- 특정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법적 처벌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규정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구성원들의 보편적 경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기존의 처벌 정도를 변경하여 전자위치확인제도 등에 의해 형기 만료 또

는 중간에도 성범죄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정도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현대적 규범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유형, 범위 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이런 논리로 볼 때 본 제도는 처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거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음

○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도소 과밀 문제가 교도소 내 인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교도소 내 공간문제, 교도소 유지비용의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음
- 본 제도의 도입과 유지비용은 교도소 유지비용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대상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감시기구 1개당 3달러 18센트로써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연간 최소 57만 달러에 불과해, 연간 1백억 달러 이상이 드는 수용시설 수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하다고 판명됨

[참고] 성욕과 성범죄와의 관계

-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성욕(Libido)을 지니고 있음
- 이 성욕은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데이트, 성관계, 결혼, 출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세계에서 표출되어짐
- 그러나, 이것이 간혹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지기도 함
- 성욕이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표출되었을 때 이를 법률상 성범죄로 규정하게 됨
-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욕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게 됨
-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욕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표출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결과임
- 특히, 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신과적 차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이들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 또는 행위 제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반인들과 일상적인 삶을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 경험
 - 성범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경험
 - 필요한 경우 물리적 치료
- 기존의 신상공개제도나 교도소 수감 등의 처벌로는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재범율이 높은 결과가 발생하게 됨
- 이들 조건을 충족하게 하고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자위치확인제도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
 - 기구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 환경 제공
 - 강한 심리적 압박
 - 필요한 경우 자연스러운 물리적 치료 병행 가능

나. 반대 입장

-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기계에 의한 인간 감시라고 하는 비인간적 문제
 - 감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문제
- 성범죄 발생 및 재발 억제 효과가 미약할 수 있음
 - 전자위치확인제도에 의한 처벌 통제는 절도,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사범에 대한 통제 효과는 있지만, 성범죄 사범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못했음
 - 상습 성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심리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가족 성폭력범에 있어 처벌 이후 다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 제도의 시행 및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음
- 제도 유지를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많은 비용이 예상 됨

- 교도소 관리 이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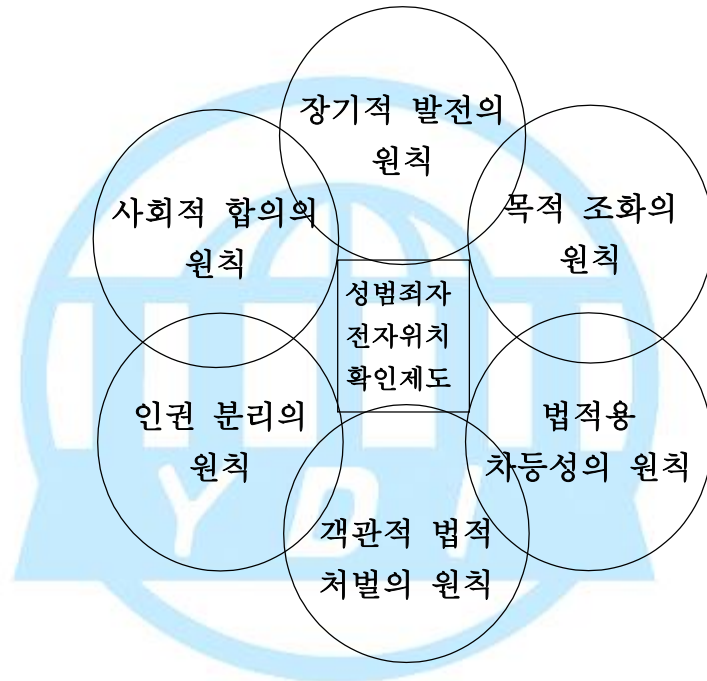


4. 한국사회에서의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방향

□ 본 제도를 한국사회에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6 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 발전의 원칙 :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 사회적 합의의 원칙 : 가능한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구성할 것
- 목적 조화의 원칙 : 성범죄 발생 및 재범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성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효과 또는 재사회화 효과도 높여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
- 인권 분리의 원칙 : 성범죄 가해자들의 인권을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으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많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구성할 것(가해자들의 인권은 가해자로서 받게 되는 처벌이라는 특정 상황 하에서의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함)
- 객관적·법적 처벌의 원칙 :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기존의 관련 제도(신상공개제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정 판결로서의 객관성을 강화할 것

- 법적용 차등성의 원칙 : 성범죄의 영역에 포함되는 범죄들이라고 하여도 범죄의 대상, 죄질, 선고형량, 범죄 횟수 등에 따라 본 제도의 차등 적용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림 1】 제도구성의 6대 기본 원칙

가. 착용대상 선정 기준

- 상습 성범죄자의 개념에 성범죄⁷⁾ 재발 횟수 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도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성범죄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 받은 자 중 선고공판 시 실형 대신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2회 이상 선고받은 자
 - 형 집행 중 가석방이 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을 부가한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최종 잔여 형기가 6개월 이하 남아 있고 본인이 선고공판 시 이 잔여 형기에 대해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가하여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초범이면서 2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모든 형기를 마친 경우 이후 일정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의무화 함
 -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실형을 모두 마친 후 일정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7)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함

- 범죄 횟수와 유형, 죄질, 형량 등에 관계없이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
- 위치확인기구 착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용 종료 이후 전문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 등에 의하여 정신적, 신체적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성범죄 재발과 관련하여 여전히 일정 이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기타 보다 구체적인 각 기준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추후 규정하도록 함

나. 착용 기간

-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범죄 횟수 및 정도, 형량, 대상자, 범죄자의 의학 적 정신상태 등에 따라 최소 6개월, 최대 10년의 기간 중 법원에서 명령 하도록 하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성범죄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 받은 자 중 선고공 판 시 실형 대신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형량만큼 착용**
 -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2회 이상 선고받은 자
 - **6개월 착용**

- 형 집행 중 가석방이 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을 부가한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 잔여형기 + 6개월 착용

-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최종 잔여 형기가 6개월 이하 남아 있고 본인이 성고공판 시 이 잔여 형기에 대해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가하여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잔여형기 + 6개월 착용

- 초범이면서 2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모든 형기를 마친 경우 이후 일정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의무화 함
 - 최초 선고 형량의 1/2 착용

-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범죄 횟수, 조질, 형량 등에 관계없이 실형을 모두 마친 후 일정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 최초 형량의 두 배 착용

- 범죄 횟수와 유형, 죄질, 형량 등에 관계없이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
 - 최초 형량의 두 배 착용

- 위치확인기구 착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용 종료 이후 전문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 등에 의하여 정신적, 신체적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성범죄 재발과 관련하여 여전히 일정 이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담당 판사와 의사 등의 협의에 의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장 착용

- 향후 시행하면서 성범죄 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전자위치확인장치 착용의 효과(착용기간과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에 따라 착용기간에 대해 조정함
- 기타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추후 규정하도록 함

다. 통제 유형

- 기본적으로 통금, 가택구금, 가택 외부 지역 제한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성범죄자 개인의 죄질, 형량,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법원에서 이들 통제 유형 중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통제 결정하도록 함
 - 통금(Curfew)⁸⁾
 - 직업 활동 및 자유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후 본인의 집에 머물게 하는 유형
 - 허용된 활동 이외에는 언제나 집에 머물도록 하는 유형
 - 가택구금(Home Detention)
 - 가택 외부 지역 제한
 - 피해자의 집, 직장 또는 지역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유형
 - 유흥지역, 주점, 학교 등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험

8) 하루 중 어느 시간대를 통금 시간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시간대별 전체 성범죄 발생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지역의 출입을 금하는 유형

- 상기 지역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금하는 유형

- 통금 방법과 가택 외부 지역제한 방법의 병용

○ 상기에서 제시한 주요 착용대상자별 가능한 통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성범죄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 받은 자 중 선고공판 시 실형 대신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통금 + 가택 외부 지역 제한

-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2회 이상 선고받은 자

→ 통금

- 형 집행 중 가석방이 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을 부가한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 통금 + 가택 외부 지역 제한

- 초범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최종 잔여 형기가 6개월 이하 남아 있고 본인이 선고공판 시 이 잔여 형기에 대해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 잔여 형기에 6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가하여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

→ 통금 + 가택 외부 지역 제한

- 초범이면서 2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모든 형기를 마친 경우 이후 일정 기간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의무화 함

→ 가택구금

-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범죄 횟수, 조질, 형량 등에 관계없이 실형을 모두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자위치확인기기를 착용하도록 함

→ 가택구금(최초형량) + 통금 및 가택 외부 지역 제한(이후 형량)

- 범죄 횟수와 유형, 죄질, 형량 등에 관계없이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

→ 가택구금(최초형량) + 통금 및 가택 외부 지역 제한(이후 형량)

- 위치확인기구 착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용 종료 이후 전문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 등에 의하여 정신적, 신체적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성범죄 재발과 관련하여 여전히 일정 이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통금

○ 통제규정 위반 시 처벌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통금시간, 가택구금, 가택 외부 지역 제한 등의 위반

→ 3회 위반 시 최초 착용기간의 1/2 기간동안 추가 착용하도록 하며, 이후 다시 3회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최초 착용기간동안 다시 착용하도록 함

→ 위반 시 착용기기에 위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며, 연락 없이 일정시간 동안 위반사항을 지속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제재

- 전자위치확인기기에 대한 의도적 고장 및 탈착
 - 착용기간, 통제유형 등에 관계없이 최초 착용기간만큼 실형을 살도록 하고 실형 이후 상기 기준에 의하여 재착용하도록 함



【표 6】 한국형 전자위치확인제도 내용

제 도 본 구 원 성 칙	착 용 대 상	착 용 기 간	통 제 유 형	위 반 시 처 별
- 장기적 발전의 원칙 - 사회적 합의의 원칙 - 목적 조화의 원칙 - 인권 분리의 원칙 - 객관적·법적 처벌의 원칙 - 법 적용 차등성의 원칙	1년6월 미만의 형량 선고범 중 초범이 본인이 희망한 자	선고형량	통금 + 가택외부지역 제한	- 3회 위반 시 최초착용기간의 1/2 추가 - 총 6회 위반 시 10년 이하에서 최초착용기간 재착용 - 의도적 고장 및 탈착의 경우 최초착용기간만큼 실행 살고 이후 기준에 의하여 재착용
	집행유예 2회 이상	6월	통금	
	가석방된 자	잔여형기 + 6월	통금 + 가택외부지역 제한	
	1년6월 이상, 2년6월 미만을 선고 받은 초범 중 잔여형기 6월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잔여형기 + 6월	통금 + 가택외부지역 제한	
	2년6월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친 초범	최초형량의 1/2	가택구금	
	2회 이상 재범자이면서 형을 모두 마친 경우	최초형량의 두 배	가택구금(최초형량) + 통금 및 가택외부지역 제한(이후형량)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초형량의 두 배	가택구금(최초형량) + 통금 및 가택외부지역 제한(이후형량)	
	착용기간 이후 검사 탈락자	담당 관사와 의사의 협의(6월 이상)	통금	

라. 전자위치확인 기구 유형, 운영, 비용

○ 전자위치확인기구 유형

- LBS 기술(GPS, GIS, 셀기반 기지국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생체이식형, 팔찌형, 발찌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 중 착용기간, 통제유형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기구를 판사가 지정함
- 가장 적합한 기술적 선택은 추후 전문가 및 관련 업체, 당국 등에 의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함

○ 운영

- 현재 존재하는 35개 보호관찰소 및 인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경찰 순찰 체계와 연계하여 실시함
- 기구 착용자들이 제한 활동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통제소는 즉시 착용 기구 및 핸드폰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동시에 해당 지역 경찰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통제를 가하도록 함

○ 비용

- 외국 사례를 보면 GPS를 이용한 LBS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망에 의한 위치확인 방법에 비해 약 1.5배 이상의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기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LBS를 사용할 경우 이용료는 저렴하지만,

전국 모든 곳(산악지형, 바다 등 포함)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기지국 초기 설치비용이 예상됨

- 평균 약 70억~100억원의 초기 설치비용(기지국 포함)과 위치확인기기 1개당 30만원 단가 및 1인당 월 2만원 사용료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필요한 경우 감시 인원의 증원이 예상됨
- 본 제도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자위치확인제도를 타 범죄유형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가 예상됨

마. 입법 방향 및 시행 절차

- 본 제도는 처벌과 교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님
-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정의 효과도 증가시켜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 및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사회화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기준이 중요할 것임
 - 처벌 유형의 다양화
 - 실형의 의미를 교도소 수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통합으로 법적 정의할 필요 있음
 - 총 형량 또는 잔여 형기를 대체하는 대체형량제도는 한국의 법체계에

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형량 내에 전자위치확인기기 착용을 의무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련법의 개정 및 의식전환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보호관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특히,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 2년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적고, 집행유예 선고가 60%를 상회하며, 최대 실형기간 역시 5년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형량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집행자들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보호관찰 제도의 개편

-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일종의 보호관찰의 의미이기 때문에 본제도의 도입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기존 보호관찰제도와 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법 추진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4 가지 과정으로 예상 해 볼 수 있음

- 여론 수렴

-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법안 초기 구성
- 장단기적 제도도입 및 시행 절차 구성

- 법안 발의

- 구체적 내용에 대해 주요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수정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 2005년 말

 - 시행
 - 관련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 2006년 초 ~ 2006년 말
 - 기초 설비 및 장비 구성
: 2006년 초 ~ 2007년 초
 - 예비적용(시행)
: 2007년 초 ~ 2008년 중
 - 문제점 분석 및 수정(필요한 경우 법개정 포함)
: 2008년 말
 -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적용
: 2009년 초

여의도연구소

5. 기대효과 및 전망

- 이 시스템은 향후 수년 이내에 미국에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정시설의 운영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중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본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 특히, 이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의 절감, 장치의 소형화 등이 예상되며 정보화의 전반적인 진전에 따른 운영기반의 확충과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것임
- 기술의 발전은 또한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도 많은 기관들은 차량에 이동용 확인 장치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
- 전자감시제도가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경우 전자감시 사회의 위험성이 경계되기도 하지만, 그 위험성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본 제도는 상습 성범죄자의 근본적 교정 및 성범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방법으로 판단됨
- 본 제도는 효과 여부에 따라 여타 강력범, 청소년 범죄 등에 적용 가능하며, 따라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는 등 향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연도별 강간 및 폭행/상해범 실행율〉

연 도	강 간(%)	폭행/상해(%)
1996	54.1	53.4
1997	56.1	55.6
1998	57.2	58.8
1999	61.3	61.7
2000	60.6	64.4
2001	64.1	65.8
2002	61.2	66.7
2003	59.7	65.9

자료 출처 : 범죄분석, 검찰청, 2003.

<연도별 강간 및 폭행/상해범 조치 상황>

연 도	범 죄 유 형	계	구 속	불 구 속
2000	강간	6,218	2,248	3,970
	폭행	21,819	259	21,560
	상해	46,837	1,330	45,507
2001	강간	5,692	1,918	3,774
	폭행	22,237	248	21,989
	상해	46,055	1,241	44,814
2002	강간	8,969	3,559	5,410
	폭행	19,955	192	19,763
	상해	41,325	1,117	4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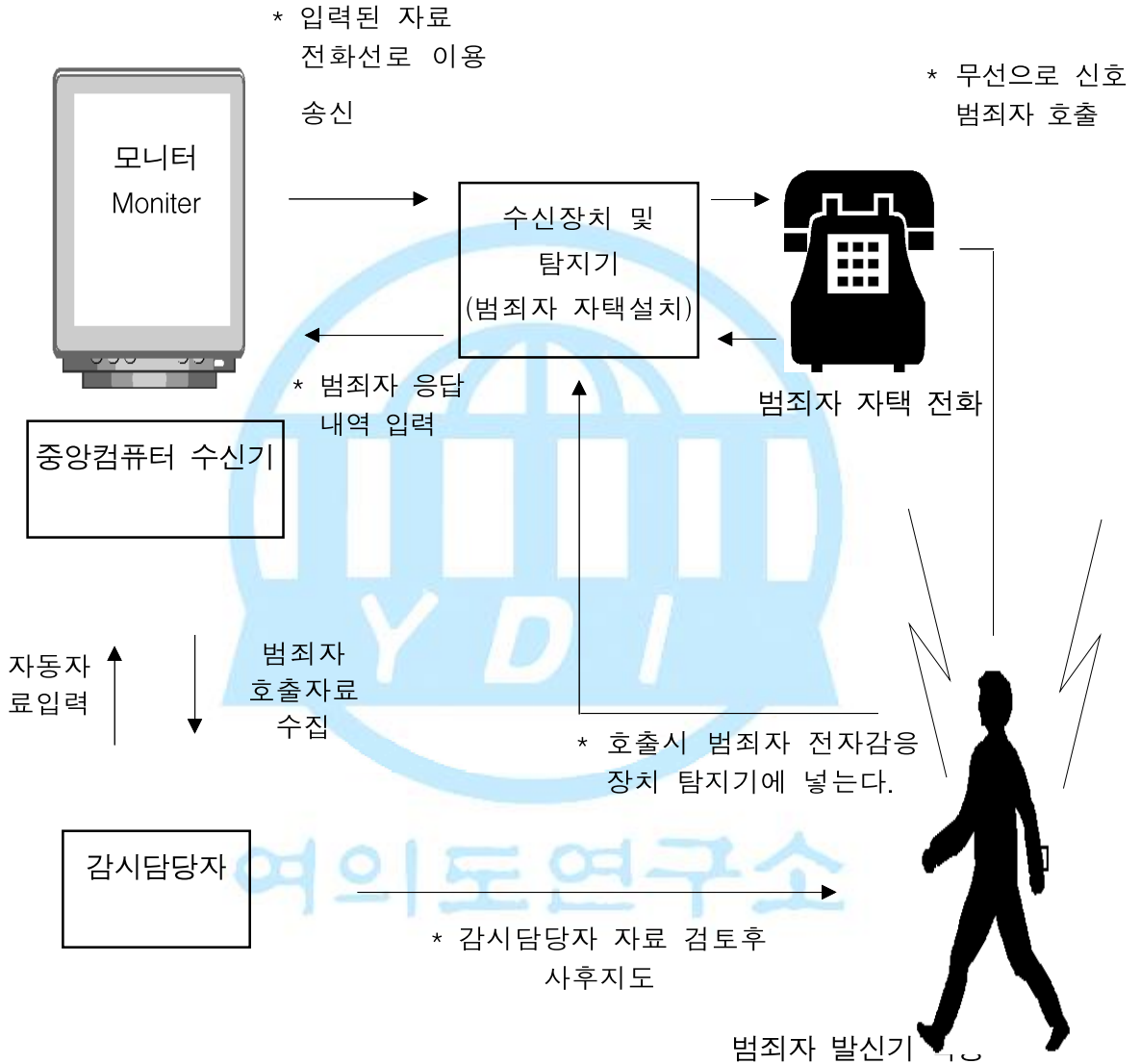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범죄분석, 검찰청, 2003.

<성범죄자 재범기간>

연도	계(재범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00	459	203	56	32	168
2001	469	176	59	37	197
2002	778	303	96	79	300
2003	730	255	122	89	264

자료 출처 : 범죄분석, 검찰청, 2004.

<기존 전자감시 모델 유형>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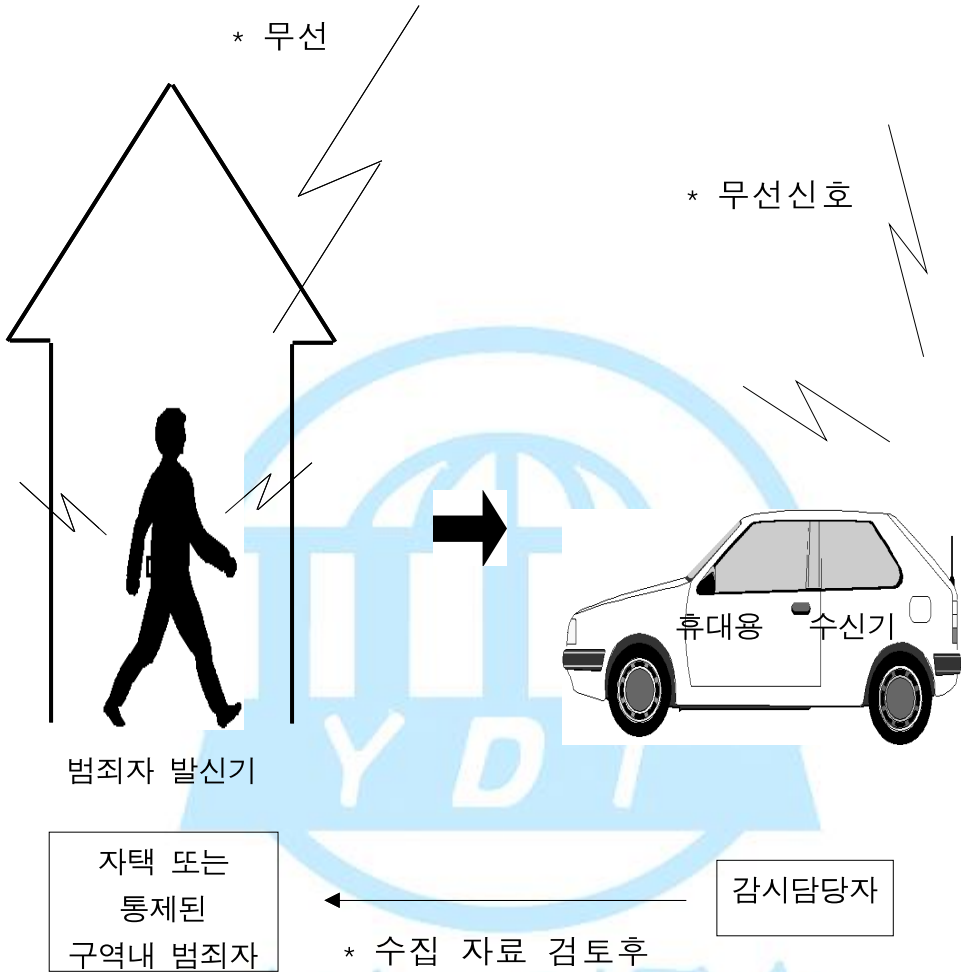


<그림 1> 단속적 감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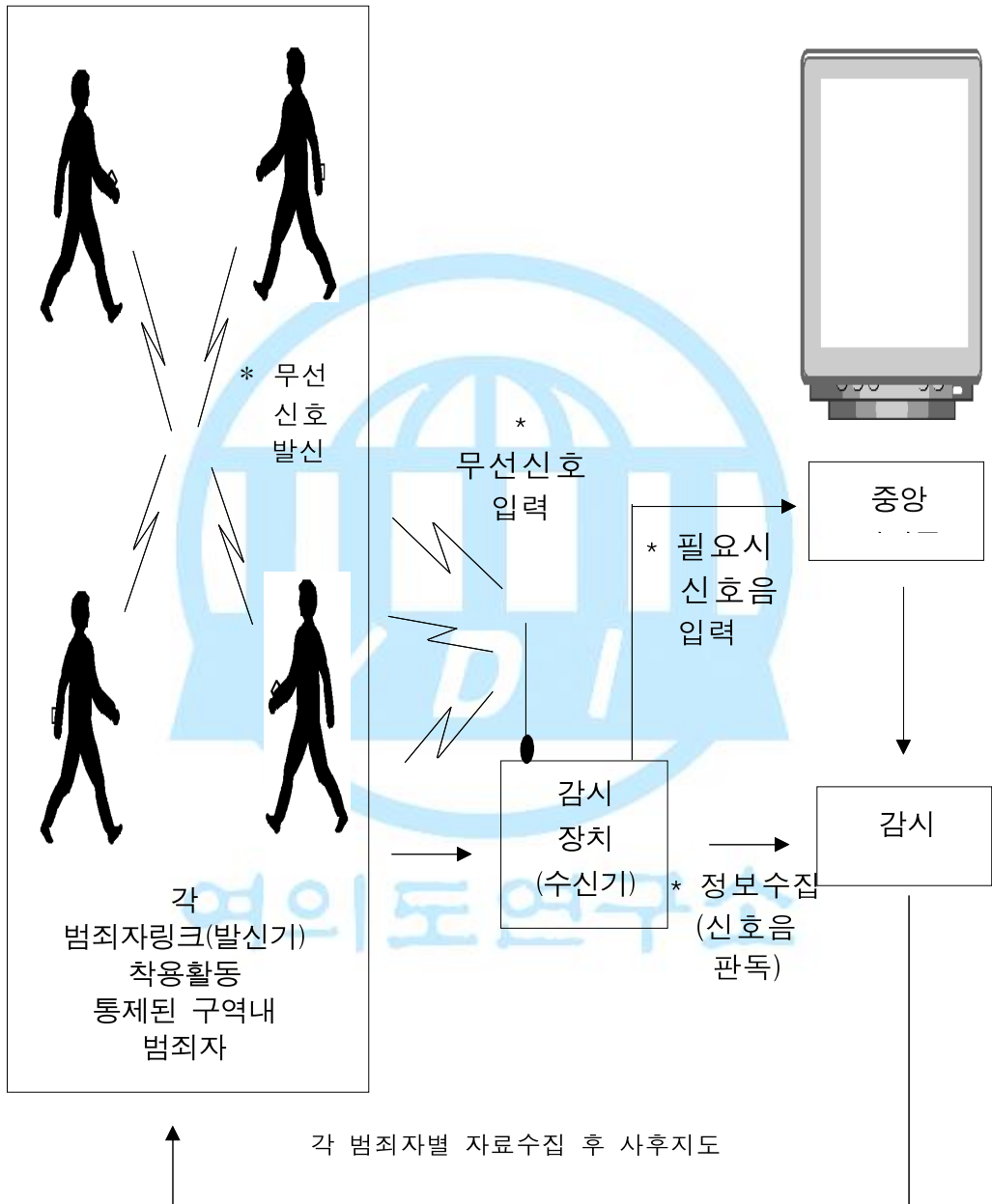
9) 김혜경, op. cit.



<그림 2> 계속적 감시시스템



<그림 3> 탐지시스템



<그림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issue brief 제05-02호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2005년 5월 6일 인쇄

2005년 5월 6일 발행

발행인 윤건영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기계회관 신관3층
